

“기회 균등”은 법입니다.

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아 두십시오!

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.

인종, 피부색, 종교, 성별, 출신국가, 연령, 장애유무, 정당 소속이나 정치관이 다른 이유로 미국 내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.

미국 내에서 취업이 승인된 합법적인 이민자 또는 그 개인의 **노동력투자법** 조항 1에 따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를 조건으로 1998년 **노동력투자법** (Workforce Investment Act: WIA) 조항 10에 따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.

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노동력투자법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누가 참여할지, 누가 혜택을 받을지 결정할 때 차별해서는 안됩니다.

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한 처우를 제공할 때 차별해서는 안됩니다.

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관리하거나 관련 취업을 결정할 때 차별해서는 안됩니다.

만일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만일 노동력투자법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중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,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불평사항을 다음 두 곳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됩니다. 기회 균등 담당관(Equal Opportunity Officer, 또는 조직에서 지정한 사람) 또는 200 Constitution Avenue, NW, Room N-4123, Washington DC 20210에 위치한 미국 노동부 산하 시민권리센터(Civil Rights Center: CRC)의 책임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.

조직에 대한 불평을 신고한 경우, 조직에서 최후통지(Notice of Final Action)를 서면으로 통보한 직후, 또는 신고 90일이 경과한 후(두 경우 중 먼저 발생한 것을 기준) 시민권리센터(주소는 위에 명시)에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. 만일 불평 신고 90일 이내에 조직에서 최후통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, 기다릴 필요 없이 시민권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90일 기일 후 30일 내에 불평사항을 시민권리센터에 재신고해야 합니다(즉, 담당자에 대한 불평사항을 신고한 후 1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).

조직에서 최후통지를 보냈지만 그 결정이나 해결방법이 불만족스러운 경우, 시민권리센터에 불평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최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민권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불평사항을 신고하시려면, 아래로 연락하십시오.

알렉시스 쏘튼-크럼프(Alexis Thornton-Crump)

athornton-crump@vec.state.va.us

버지니아 고용 위원회(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)

P.O. Box 1358

Richmond, VA 23218-1358

(804) 786-3466

팩스: (804) 371-2814

VA Relay: 711

기회 균등 고용주/프로그램. 요청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